

## 제8기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20조에 의거 제8기 임시주주총회를  
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23년 09월 01일 (금) 오전 9시

2. 장 소 : 경기 용인시 기흥구 기흥구 탑실로35번길 57 (주)저스텍 3층 강당

### 3. 회의목적사항

#### 가. 부의안건

① 제1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### 4. 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 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### 6. 주주총회 참석 시 제출서류

- 직접행사 : 신분증

- 대리행사 : 위임장(첨부 양식 참조, 인감 날인), 주주의 인감증명서, 대리인의 신분증

※ 신분증 미지참 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7. COVID-19(코로나19) 대응 방역 조치 안내 :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의심되거나 자가격리대상 등에 해당하시는 주주분들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 부탁드립니다. 또한 주주총회 입장 전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,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총회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총회의 일정변경이 있을 경우, 즉시 전자공시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

2023.08.16

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35번길 57

주식회사저스텍

대표이사임영진 (직인생략)

[별첨]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	개정 사유
<p>제2조(목적)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1. 반도체, DISPLAY, SOLAR Cell, LED 제조 장비, 의료용 기기 제조장비의 제조, Refurbish 및 판매업</p>	<p>제2조(목적)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1. 반도체, DISPLAY, SOLAR Cell, LED, <b>2차전지 제조 장비</b>, 의료용 기기 제조장비의 제조, Refurbish 및 판매업</p>	<p>2차전지 장비사업 추가</p>
<p>제22조(소집통지)</p> <p>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,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 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</p> <p>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 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, 약력, 추천인 그밖에 「상법 시행령」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「상법」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, 회사의 본.지점, 명의개서 대행회사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⑤ 회사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</p>	<p>제22조(소집통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 삭제-</p>	<p>제2항과 중복내용으로 삭제 진행</p>

<p>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(신문)과 매일경제(신문)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</p>		
<p>제53조(이익배당)</p> <p>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.</p> <p>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,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.</p>	<p>제53조(이익배당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<u>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으며,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,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,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을</u> 주주총회의 결의로 진행할 수 있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상법 제344조 2의 제1항에 의거 내용 추가</p>
<p>제17조 2(전환사채의 발행)</p> <p>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li> <li>2.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li> <li>3.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생산, 판매, 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li> <li>4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li> </ol> <p>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, 전환 사채의 총액, 전환의 조건, 기간 등은 이사회가 정한다.</p>	<p>제17조의 2(전환사채의 발행)</p> <p>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사채의 액면총액이 <b>250억원을</b>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전환사채 발행한도 증액</p>

<p>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④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.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이사회는 사채의 액면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 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시 이사회 결의로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.</u></p>	<p>[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 2023] 반영</p>
<p>부칙 제1조(시행일)</p> <p>본 정관은 <u>2023년 3월 31일</u>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 제2항 단서조항, 제8조의2, 제14조 제3항 단서조항, 제14조의2, 제15조 제4항, 제16조 제1항 단서조항, 제19조 단서조항, 제19조의2 개정 규정은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날부터 적용한다</p>	<p>부칙 제1조(시행일)</p> <p>본 정관은 <u>2023년 9월 1일</u>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 제2항 단서조항, 제8조의2, 제14조 제3항 단서조항, 제14조의2, 제15조 제4항, 제16조 제1항 단서조항, 제19조 단서조항, 제19조의2 개정 규정은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날부터 적용한다</p>	

# 위 임 장

본인은 2023년 9월 1일 개최되는 주식회사 저스템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권유자 주식회사 저스템이 지정하는 자에게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.

==== 다 음 ====

1. 주주 번호:
2. 소유 주식수: 주
3. 의결권 있는 주식수: 주
4. 위임할 주식수: 주
5.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

구분	주주총회 목적사항	찬성	반대
제1호 의안	정관 일부 변경의 건		

## 6.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·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

–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 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.

–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.

항 목	지시내용

\* 각 의안에 대한 찬반표시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백지위임장은 해당 의안의 표결에 있어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첨부 : 인감증명서 1부

2023년 월 일

사업자(주민)등록번호:

주 주 명: (인)